

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

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 및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제28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재 작성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,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8. 11. 12.

강릉시 장

1. 대상문화재

연번	지정종별		문화재명	소재지	비고
1	사적	제448호	강릉 굴산사지	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 외	
2	사적	제490호	강릉 초당동 유적	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-2 외	
3	보물	제165호	강릉 오죽헌	강원도 강릉시 읍곡로 3139번길 24	
	보물	제183호	강릉 해운정	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125	
	국가민속문화재	제5호	강릉 선교장 외	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외	

2. 조정사유

-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·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·개선하기 위함.

3. 조정내용 :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

4. 공고기간 : 2018. 11. 12 ~ 2018. 12. 01.(20일간)

5.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

-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(개발 및 건축행위 등) :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처리
-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: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

6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공고기간 만료일(2018년 12월 01일) 18:00까지
 - 제출방법 : 서면제출(붙임 의견서 이용)
 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, 팩스, 우편접수 등
 -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
 - 제출장소
 - 방문 :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
 - 우편 :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, 강릉시청
- ※ 문의처 :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(☎033-640-51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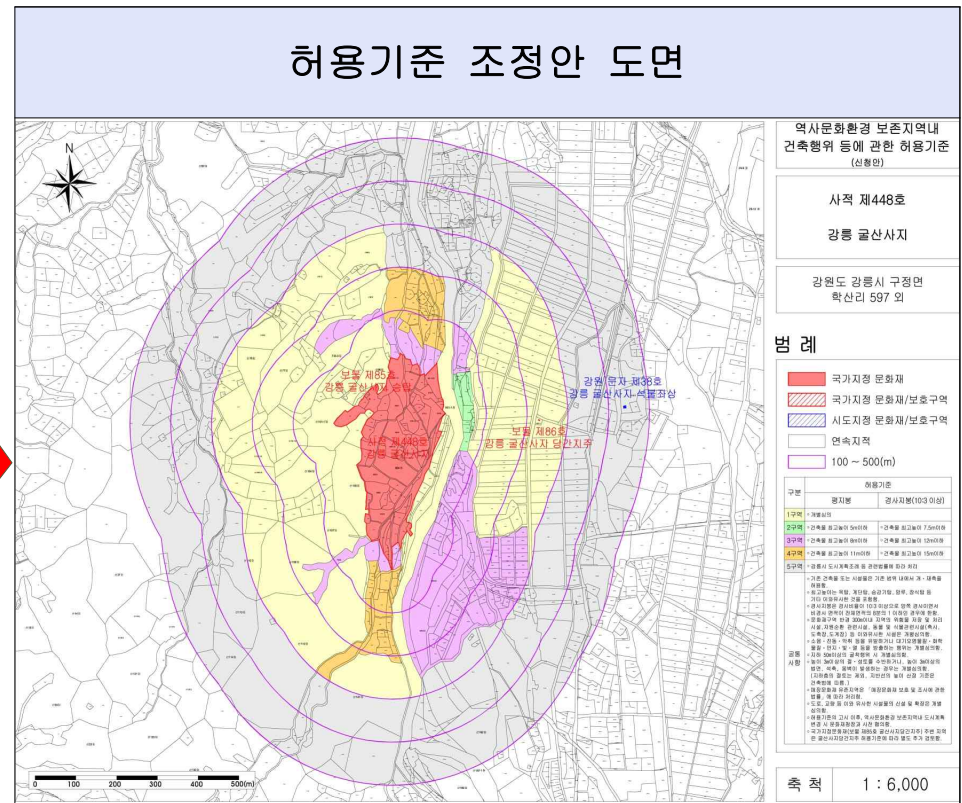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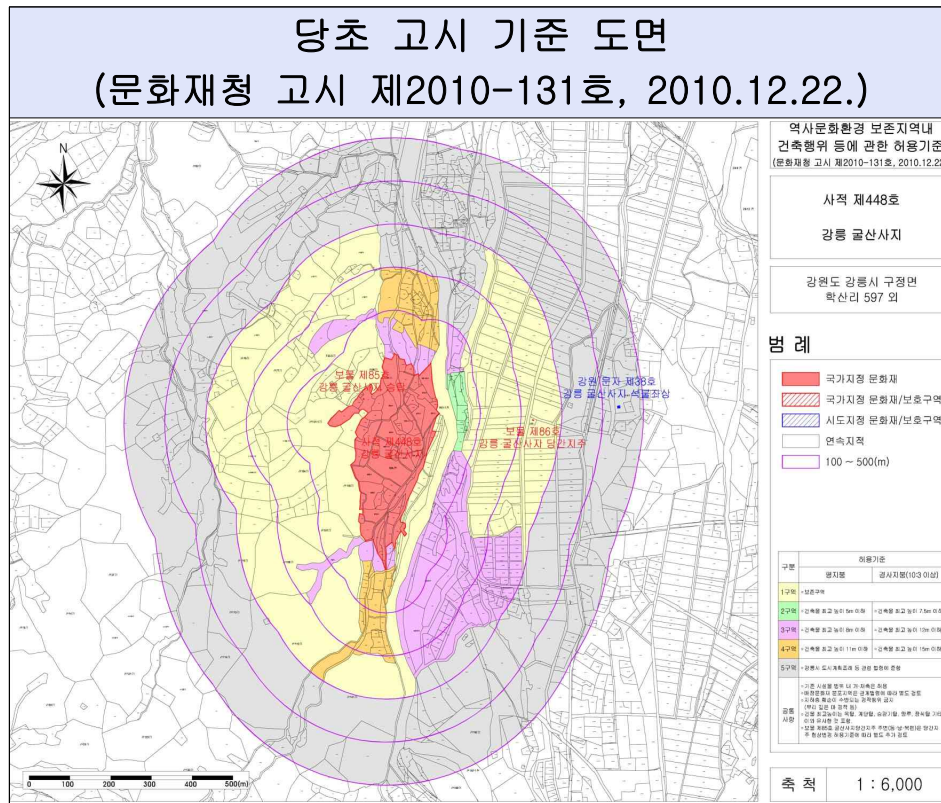
붙임 1.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1부.
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

<붙임 1>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

1) 강릉 굴산사지(사적 제448호)

가. 도면



나. 허용기준 조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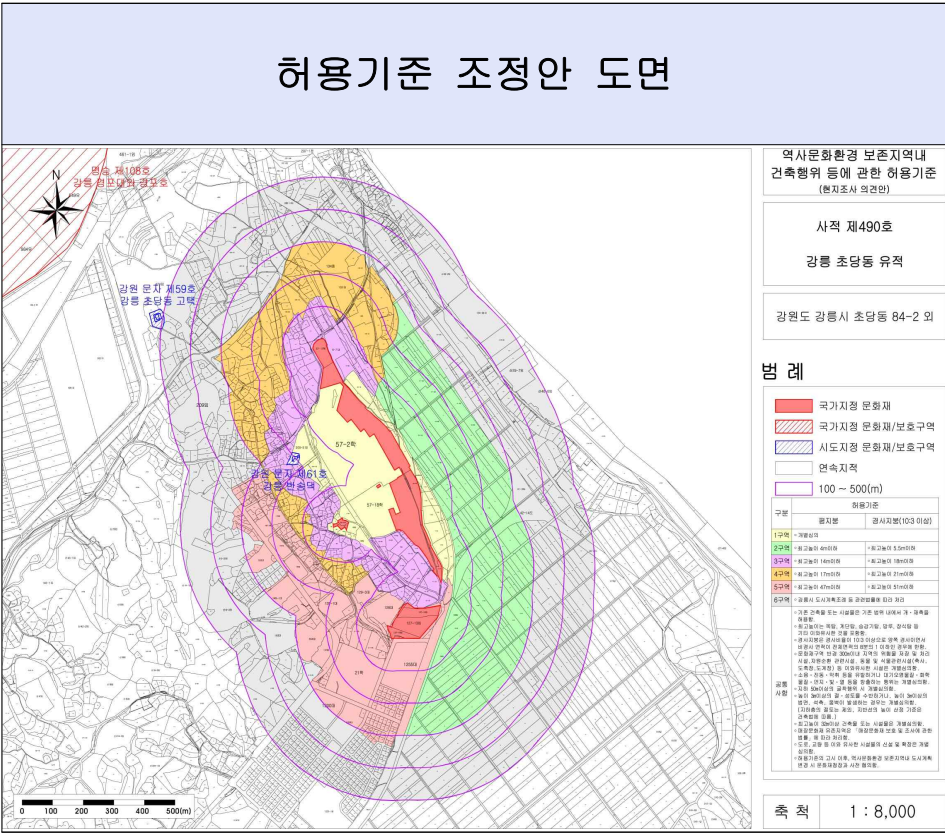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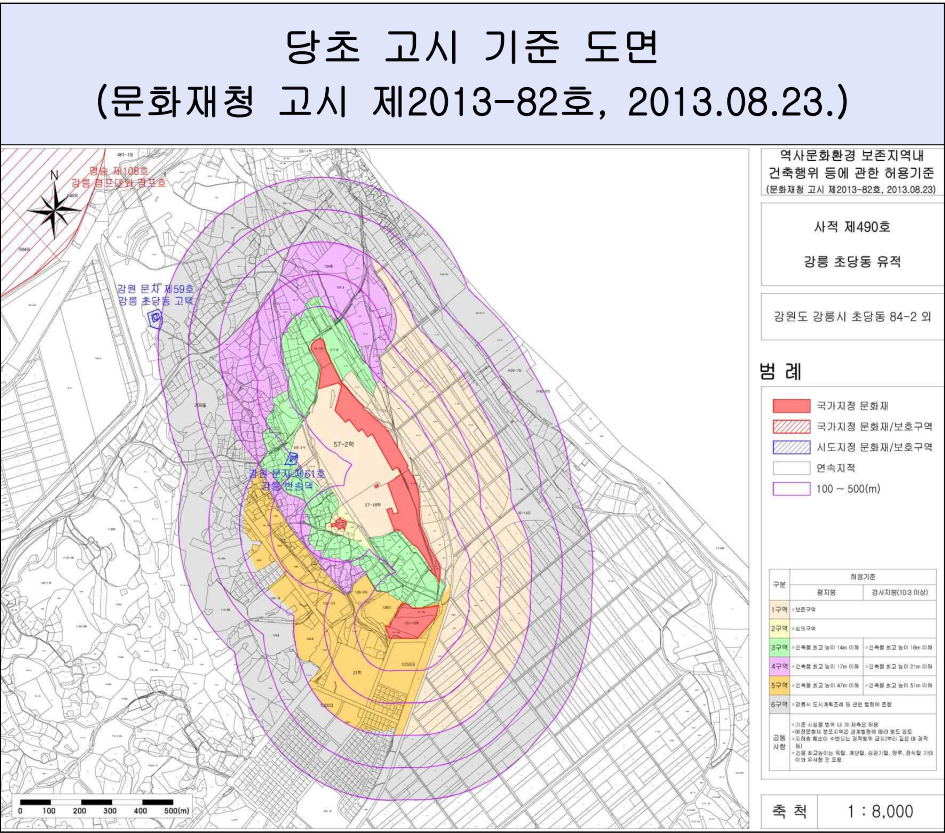
당초 고시 기준 내용(2010.12.22.)		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원지형 보존	
2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7.5m 이하
3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
4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
5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	
공통 사항	○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○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(뿌리 깊은 마 경작 등) ○건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. ○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(동·남·북편)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	



허용기준 조정안 내용		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개별심의	
2구역	○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	○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
3구역	○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	○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
4구역	○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	○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
5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○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. ○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○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○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○허용기준의 고시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○국가지정문화재(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) 주변 지역은 굴산사지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함.	

2) 강릉 초당동 유적(사적 제490호)

가. 도면



나. 허용기준 조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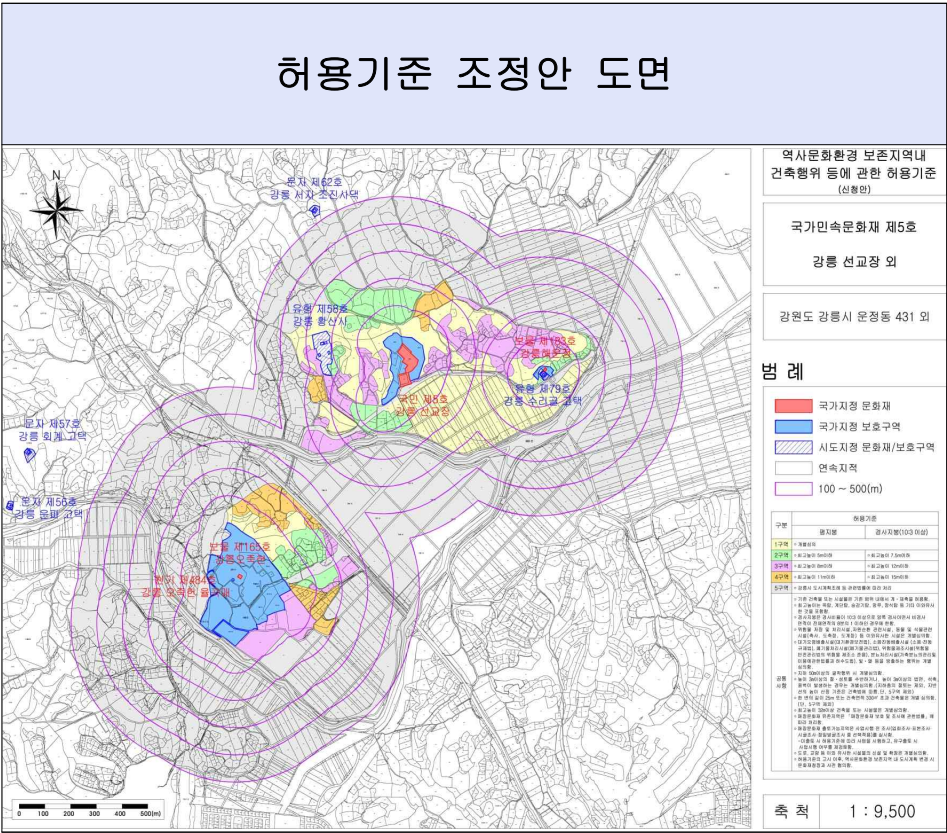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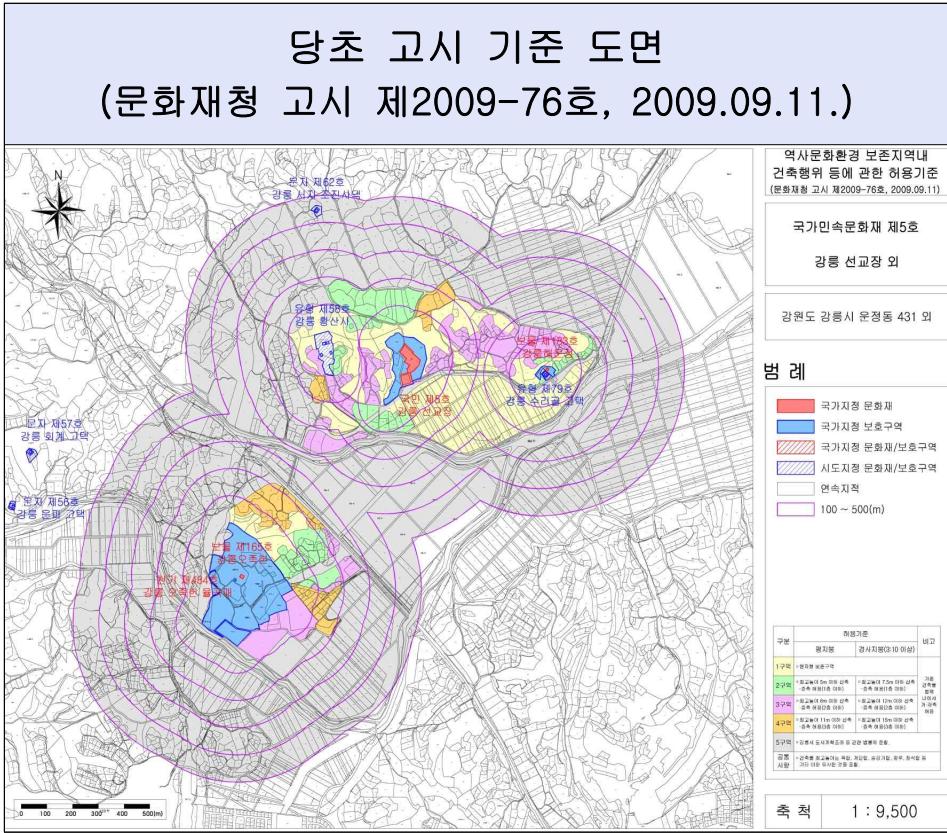
당초 고시 기준 내용(2013.08.22.)		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보존구역	
2구역	○심의구역	
3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
4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
5구역	○건축물 최고 높이 47m 이하	○건축물 최고 높이 51m 이하
6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	
공통 사항	○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○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(뿌리 깊은 마 경작 등) ○건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.	



허용기준 조정안 내용		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개별심의	
2구역	○최고높이 4m이하	○최고높이 5.5m이하
3구역	○최고높이 14m이하	○최고높이 18m이하
4구역	○최고높이 17m이하	○최고높이 21m이하
5구역	○최고높이 47m이하	○최고높이 51m이하
6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○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. ○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○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○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. ○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○허용기준의 고시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

3) 강릉 선교장 외(국가민속문화재 제5호)

가. 도면



나. 허용기준 조정 내용

당초 고시 기준 내용(2009.09.11.)			
구분	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원지형 보조구역		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허용
2구역	○최고높이 5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1층 이하)	○최고높이 7.5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1층 이하)	
3구역	○최고높이 8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2층 이하)	○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2층 이하)	
4구역	○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3층 이하)	○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 ·증축 허용(3층 이하)	
5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		
공통 사항	○건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.		



허용기준 조정안 내용			
구분	허용기준	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개별심의		
2구역	○최고높이 5m이하	○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○최고높이 8m이하	○최고높이 12m이하	
4구역	○최고높이 11m이하	○최고높이 15m이하	
5구역	○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 사항	○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 규제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, 빗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○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 단, 5구역 제외) ○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(단, 5구역 제외) ○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. ○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-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. 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. ○허용기준의 고시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	

<붙임 2>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

☐ 의견 제출자

- 주 소 :
- 성 명(법인, 단체명) :
-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☐ 의견내용

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8. . .

의견제출자 : (인)

강릉시장 귀하